



10여 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
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
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3명)의 즉각 송환 등 촉구 〉

■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61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7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7
2. 결의안의 제안 배경	8
3. 검토의견	9
※ 참고자료	13

I. 제안 경위

1.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21인
2. 제안일 : 2025. 3. 26.
3. 회부일 : 2025. 3. 27.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1조제2항, 제10조 및 제30조의 규정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인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흥정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난 70년간 역대 정부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과 지난 10여년 사이에 중국의 탈북민을 돕고 북한 주민에

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 캐나다 교포 선교사는 모두 석방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보호의 뼈아픈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이 작년 11월 12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리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 59/2024호 (opinion no. 59/2024)를 채택하고, 이를 올 3월 13일 공개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특히, WGAD는 유엔 공식문서로 공표된 17쪽 분량의 의견문(A/HR C/WGAD/2024/59)에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구금은 영장 제시 없는 체포와 판사대면권 위반, 연락차단상태 구금(incommunicado detention) 등으로 합법적 근거를 원용할 수 없고(자의적 구금 유형 I 해당),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의 행사로 인한 것이며(자의적 구금 유형 II 해당), 변호인 조력권 위반,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사법부 독립과 상소권 부재, 영사 조력권 위반 등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었으며(자의적 구금 유형 IV 해당), 종교인, 남한 사람에 대한 국제법에 위배되는 차별을 구성하여(자의적 구금 유형 V 해당) 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및

자유권규약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WGAD는 또한 최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억류 사건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일 경우,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전에도 WGAD는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와 두 딸, 1969년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 씨, 탈북 후 중국에서 보위원에게 잡혀 온 국군포로 최상수 씨와 그 아들 최성일 씨에 대해서도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린 바 있고, 1970년대 유럽에서 납북된 파독 광부 강중석 씨와 수도여고 고상문 씨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번 WGAD 의견 공개 이후,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WGAD 의견을 환영하고 북한이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국민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는 2023년 12월 19일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 78/218호 및 2024년 12월 17일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 79/181호에서 북한에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23일 미얀마 인권 결의 37/32호, 동년 9월 27일 미얀마 인권 결의 39/2호, 2019년 3월 22일 미얀마 인권 결의 40/29호에서 거명된 구금된 로이터 소속 와 론 기자와 초 소에우 기자가 2019년 5월 7일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된 것에 주목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WGAD 의견 59/2024호 공개를 계기로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헌법상 우리 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WGAD가 북한에 10여년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리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을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그 밖에 WGAD에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즉각 송환하고, 북송 탈북민과 정치범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석방될 때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세 선교사를 거명하여 석방을 촉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과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위하여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

WGAD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륙별로 임명한 인권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으로 전세계에서 접수되는 자의적 구금 진정사건에 대해 진정인과 해당국 정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며, 사법부의 판결에 해당되는 개별 사건에 대한 WGAD의 ‘의견(opinion)’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처럼 유엔 공식문서로 공표되며,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인용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권위가 높음.

WGAD는 작년 11월 12일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리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 59/2024호(opinion no. 59/2024)를 채택하고, 이를 올 3월 13일 공개하였음.

앞서 WGAD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와 두 딸, 1969년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

원 씨, 탈북 후 중국에서 보위원에게 잡혀 온 국군포로 최상수 씨와 그 아들 최성일 씨에 대해서도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린 바 있고, 1970년대 유럽에서 납북된 파독 광부 강중석 씨와 수도여고 고상문 씨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WGAD 의견 59/2024호 공개를 계기로 이번 WGAD 의견 채택을 환영하고, 북한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그 밖에 WGAD에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즉각 송환하고,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석방될 때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세 선교사를 거명하여 석방을 촉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과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위하여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결의안은, 국회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이하 “WGAD”)¹⁾이 국민 선교사(3명)에 대한 북한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WGAD가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을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정부에 대하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세 선교사를 거명하여 석방을 촉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과,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위해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도록 결의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 및 국제적 관심 제고 등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1)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은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 1991/42 호에 따라 설치되었고,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HRC)에서 임명하는 44개 주제별 특별절차 중 유일하게 개인 진정에 대하여 준사법적(quasi-judicial) 절차에 따라 구체적 인권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임. WGAD의 주된 활동은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등 인권조약 이행감독위원회의 개인통보(communications)에 대한 ‘견해(views)’처럼 개인의 진정에 대하여 의견(opinions)을 내는 것임(물론 다른 유엔 인권특별절차들처럼 해당국 정부에 질의서한이나 보도자료를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옴부즈맨 방식의 활동도 수행함). WGAD의 설립 및 기능은 불임 [참고자료 1] 참조.

2. 결의안의 발의 배경

- 2024년 11월 12일 WGAD는 우리 국민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준길)의 북한 내 억류가 「세계인권선언」²⁾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³⁾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임을 결정하는 의견서(Opinion No. 59/2024, 2025.3.13. 공개)를 채택하였음.⁴⁾
- WGAD는 이 의견서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판사 접근권 및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미흡, 연락 차단 상태의 구금, 종교·국적에 기초한 차별, 고문·강요된 자백, 공정 재판권 침해 등 절차적·실체적 인권규범 위반(카테고리 I, II, III, V)⁵⁾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에 즉각적 석방, 보상, 독립적 조사와 책임자 조치, 그리고 조치 결과의 6개월 내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북한은 실무그룹의 질의에 소극적·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국제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WGAD 결정의 취지를 공식 환영하며, 북한이 해당 선교사 등 우리 국민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⁶⁾

2) 「세계인권선언」과 두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일명 ‘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일명 ‘사회권규약’)은 통칭 ‘국제인권장전’으로 불리움.

3) 통상 자유권규약으로 약칭되며, 북한도 이 국제규약의 당사국임. 남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 2] 참조.

4)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제101차 회기(2024.11.11.~15.) 채택 의견서(A/HRC/WGAD/2024/59)는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79376/files/A_HRC_WGAD_2024_59-EN.pdf 참조. 2024년 7월 피해자가족이 WGAD에 진정을 제기하여 동 의견이 채택되었음.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송환을 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음.

5) WGAD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5개 유형(카테고리)는 [참고자료 1.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대한 설명자료] 참조. 동 결의안 주문 중 “변호인 조력권 위반,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사법부 독립과 상소권 부재, 영사 조력권 위반 등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었으며(자의적 구금 유형 IV 해당)”에서 “IV”은 명백한 오타이므로 “III”으로 수정해야 함.

3. 검토의견

□ 동 결의안은 헌법 제1조제2항, 제10조, 제30조에 따른 국가의 국민보호와 인권 옹호 의무, 국제적 인권규범 준수 의지를 공식 표명하는 한편, WGAD 의견서 채택을 환영하고 정부에 선교사 석방 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총회 등 국제무대에서의 지속적 이슈화 및 외교활동을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WGAD가 판단한 선교사(3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에 대한 즉각적 석방과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며, 우리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교섭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실질적 대응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참고로 “납북자”는 6.25전쟁 시기의 전시납북자와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전후납북자로 구분되고, “억류자”는 2013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사로잡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적 선교사, 사업가 등 6명으로 공식 확인되며, 국군포로는 6.25전쟁 당시의 포로 등으로 북한으로 이송된 인원으로 정부 공식통계는 2007년 기준 약 1,770명(생존 56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부 탈북해 귀환에 성공했으나 대다수의 북한 내 생존자 확인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이들 송환문제 해결은 국

6) 통일부 대변인 성명(2025. 3.14.),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5. 3.17.) 참고.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송환을 위하여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음. 당시에 조사에 착수한 WGEID가 북한에 서한을 보낸 바 있으나 북한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음.

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10조7)에 따른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음.

□ 한편, 탈북난민과 정치범의 경우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인도적 보호 대상이므로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사회의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하도록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외교활동이 요구되고, 특히 정치범의 경우 체제에 반대하거나 사상, 이념 등에서 북한 당국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되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생명·자유·적법 절차의 권리 보장 및 박해 금지 요구 등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봄.

□ WGAD 의견서는 유엔 공식문서로서 상당한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인용되어 관련 사안의 국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 따라서, WGAD 의견서에서 남북자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가 이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해결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WGAD 등 유엔 인권특별기구의 의견은 실질적 구속력이나 강제집행 수단이 부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이거나 남북대화

7)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 단절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실질적 집행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결의안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제인권기준 준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대외적으로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등 국민보호 및 인권 문제에 관한 공론화를 촉진함으로써 정부의 소극적인 외교·통일 및 인권정책 집행에 중장기적 압박 내지 정책 지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도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호소를 넘어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강력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관심 촉진을 통해 피해 가족에 대한 사회적 연대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즉, 종래 발의된 결의안들이 인도적 차원의 호소와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국내적인 선언에 머무른 것이었다면, 동 결의안은 유엔 산하기구의 공식적·객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요구라는 상황 변경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동 결의안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그 방향에 있어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아울러 동 결의안의 채택과는 별도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국민 보호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피해자 가족지원과 생사확인 등 실질적 구제방안, 모든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포괄적 인권보

호,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업 및 종합대책 등 구체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동 결의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외교부는 “탈북난민”이라는 용어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협력 재개 노력 및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참고로, 역대 국회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송환 촉구 관련 결의안은 세 차례(2000년, 2008년, 2013년) 본회의 의결된 바 있으나, 억류자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은 2018년 5월 처음 제기된 이후 제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음에도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음.⁸⁾

8) 2000년 이후 납북자 등 송환촉구 관련 결의안 등은 [참고자료 4] 참조.

참고자료 1.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대한 설명자료 〉

가. 설립 및 기능

1) 설립

1991년 현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3년을 임무기간으로 5명의 전문가 실무그룹이 자의적이거나, 국제규범에 위반된 구금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사례들에 관한 정보를 접수·수집하여 연례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RES/91/42). 인권위원회는 결의안 1997/50을 통해 실무그룹의 권한을 연장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총회 결의안 60/251 및 인권이사회 결정 1/102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이사회가 맡았음. 인권이사회는 가장 최근 결의안 51/8을 통해 실무그룹의 권한을 3년간 연장

2) 기능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일부로, 자의적 구속과 구금 여부를 확인하여 의견(opinion)을 표명하고, 긴급 사항에 있어서는 긴급구제(urgent appeal)을 요청하며, 자의적 구금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석방과 배상(release and reparations)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의 구제가 필요함을 확정하는 기능을 행사

- 자의적이거나 기타 세계인권선언과 해당 국가가 가입한 국제규약들에 규정된 국제규범에 위반된 자유박탈의 사례들 조사
-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피해당사자, 가족, 대리인들로부터의 정보 수집과 구득
- 긴급구제요청과 의견절차를 통해 관련 정부들에 대해 사례들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주의를 환기
- 관련 정부들의 초청에 의해 국가의 상황과 자의적 구금이 행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한 국가방문 실시
- 국가들이 자의적인 자유박탈을 예방하고 억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사례들의 검토를 돕기 위한 일반적 해석(deliberations)의 작성
- 인권이사회에 연례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나. ‘자의적 구금’의 범주(categories)

실무그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유 박탈을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함.

1. 자유 박탈을 정당화할만한 법적 근거를 명백히 제시할 수 없는 경우(예: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또는 사면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경우) - 카테고리 I
2.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규정된 권리 또는 자유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또한 해당 국가가 당사국인 경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의거한 경우 - 카테고리 II
3. 「세계인권선언」 및 해당 국가가 수락한 관련 국제문서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전부 또는 일부 미준수가 자의적 자유 박탈의 성격을 띠 정도로 중대할 경우 - 카테고리 III
4. 망명신청자, 이민자 또는 난민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검토나 구제 절차 없이 장기간 행정구급에 처해진 경우 - 카테고리 IV
5. 인간의 평등을 부정하려 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출생, 국적,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언어, 종교, 경제적 조건,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성별, 성적지향, 장애 또는 기타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해 자유 박탈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 - 카테고리 V

다. 절차

1. 진정서 접수
2. 당사국 정부에 반박 기회 제공(90일 內)
3. 당사국 정부의 답변에 대한 진정서 제출자의 비평
4. 실무그룹의 의견(opinion)
 - 조치 a) 당사자가 진정의 접수 후,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사자가 석방된 경우에는 진정이 종결. 그러나 당사자가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실무그룹은 진정별로 문제의 자유 박탈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b) 진정이 자의적 자유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무그룹의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발표한다. c) 당사국 또는 소스로부터 추가 정부를 입수해야 하는 경우, 실무그룹은 그러한 정보가 제출될 때까지 진정을 계류시킨다. d) 진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실무그룹은 진정을 잠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종결시킨다. e) 자유 박탈이 자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실무그룹은 그러한 취지의 소견서를 발표하고, 당사국 정부에게 권고안을 전달한다.
5. 의견서, 권고안과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
6. 유엔인권이사회 연례회의에 제출

참고자료 2.

〈 남북한의 국제인권규약 가입 현황 〉

(2025.04.16. 현재)

협약명	협약 채택일 (발효일)	가입국 수	남한 가입일 (발효일)	북한 가입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1966.12.16. (1976.03.23.)	174	1990.04.10. (1990.07.10.)	1981.09.1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1966.12.16. (1976.01.03.)	173	1990.04.10. (1990.07.10.)	1981.09.14.
인종차별철폐협약	1965.12.21. (1969.01.04.)	182	1978.12.05. (1979.01.04.)	미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12.18. (1981.09.03.)	189	1984.12.27. (1985.01.26.)	2001.02.27.
고문방지협약	1984.12.10. (1987.06.26.)	175	1995.01.09. (1995.02.08.)	미가입
아동권리협약	1989.11.20. (1990.09.02.)	196	1991.11.20. (1991.12.20.)	1990.09.21.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12.18. (2003.07.01.)	60	미가입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2006.12.13. (2008.05.03.)	192	2008.12.12. (2009.01.10.)	2016.12.06.
강제실종협약	2006.12.20. (2010.12.23.)	77	2023.01.04. (2023.02.03.)	미가입

자료: 외교부

참고자료 3.

< 북한의 외국인 억류 사례: 2010년 이후, 12건>

이 름	억류기간	원 인	北 재판결과	해결과정
곰즈 (영어강사)	'10.1.25.~8.27. (215일)	북한 선교·인권개선 등을 목적으로 자진 입북	△8년 노동 교화형 △벌금 7천만 북한 원(민족적대죄 등)	○ 카터(前대통령) 방북 후, 특별 사면 형식으로 석방
전용수 (목사)	'10.11.11. ~'11.5.27. (197일)	북한 선교 목적으로 자진 입북	-	○ 카터 前대통령('11.4.26.-29.),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11.5.10.-13.), 로버트 킹 대북 인권특사('11.5.24.-28.) 등 방북
케네스 배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12.11.3. ~'14.11.9. (약 2년)	관광목적으로 입국 후 체 포 * 탈북자/요덕수용소 관련 USB 적발	15년 노동교화형 (국가전복 음모)	○ 리처드슨 의원 방북 (‘13.1.7.-10.), 케네스 배의 모 친 방북 ('13.10.11.~15.) ○ '14.11.8., 제임스클래퍼 미 국 가정보국장 비밀협상 후 석방
메릴 뉴먼 (한국전쟁 참전용사)	'13.10.27. ~'13.12.7. (42일)	관광목적으로 입국 후 게 랄라 부대(구월산 부대) 생 존자 및 가족과 접촉 시도 혐의로 출국 직전 체포	-	○ 사죄문 공개발표('13.11.30.) ○ "사죄했으며, 나이와 건강상태 등 고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추방" 주장(중통)
매튜 토드 밀러 (관광객)	'14.4.10. ~11.9. (7개월)	관광목적으로 입국 후 평 양공항에서 관광증을 찢고 망명을 주장하여 체포	6년 노동교화형 (반공화국 적대범죄)	○ '14.11.8.,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비밀협상 후 석 방
제프리 파울 (관광객)	'14.5.7.~10.22. (6개월)	청진 관광목적으로 입국 후 성경책 유포 혐의로 출 국 과정에서 체포	-	○ '14.10.22. 석방 - 오바마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 청을 고려 석방 주장(10.23.)
아르투로 마르티네스 (관광객)	'14.12.14~'15.1. (약15~45일)	불법입북	-	-
웬비어 (대학생)	'16.1. ~'17.6.13. (1년 5개월)	국가전복음모 - 형법 제60조	15년 노동교화형 (‘16.3.16.)	○ '17.6.13. 석방(혼수상태 송환) ○ '17.6.19. 미국에서 사망
임현수 (목사)	'15.1월말~ '17.8.9. (2년 6개월)	국가전복음모 -형법 제60조	무기 노동교화형 (‘15.12.16)	○ '17.8.8. 캐나다 다니엘 장 국 가안보보좌관 방북 ○ '17.8.9. 병보석 석방(중통)
김동철 (사업가)	'15.10.~ '18.5.9. (919일)	국가전복음모·간첩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 모죄), 제64조(간첩죄)	10년 노동교화형 (‘16.4.29)	○ 5.9. 폼페이오 방북 석방 - 국무위원장 명의 특별사면(중 통)
김상덕 (교수)	'17.4.22.~'18.5.9 (1년18일)	국가전복 적대행위로 4.22 단속(5.3, 중통)	-	
김학송 (관리직)	'17.5.6.~'18.5.9. (1년 4일)	반공화국적대행위 5.6 억 류(5.8, 중통)	-	
브루스 바이론 로렌스 (관리직)	'18.10.16. ~11.16.(32일)	불법입북	-	-

주: ‘중통’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내용

자료: 통일부

참고자료 4.

< 2000년 이후, 납북자 등 송환촉구 관련 결의안 현황 >

(2025. 4. 15. 기준)

대별	의안명	발의자	제안일	의결일	논의결과
16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강삼재의원 외 132인	2000.10.12.	2000.12.8.	수정가결
18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박선영의원 등 14인	2008.10.22.	2009.12.7.	수정가결
	국군포로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이호창의원 등 16인	2010.10.5.	2012.5.29.	임기만료 폐기
19대	국군포로송환 촉구 결의안	김진태의원 등 17인	2013.5.15.	2013.6.25.	수정가결
20대	북한에 억류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이연주의의원 등 10인	2018.5.18.	2020.5.29.	임기만료 폐기
	북한에 의한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김재경의원 등 15인	2019.4.18.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하태경의원 등 14인	2019.5.16.		
	북한에 납북억류 중인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 송환 촉구 결의안	이주영의원 등 16인	2019.11.29.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YS-11기 납치 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납북 국민 11인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정병국의원 등 18인	2019.11.29.		
21대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조명희의원 등 39인	2020.9.29.	2024.5.29.	임기만료 폐기
	한국판 푸에블로호 사건인 1970년 6월 5일 해군 방송선 I-2호정 승조원 나포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북한의 I-2호정 승조원 20명의 생사확인 및 포로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20.11.11.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성일종의의원 등 13인	2020.11.19.		
22대	10여 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옥 감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	김기현의원 등 21인	2025.3.26.	-	외통위 접수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2025.4.15.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